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 규정

제정 2017. 9. 1., 명칭변경 2022. 4.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입학사정관실 규정 제7조에 의거 호서대학에서 시행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개발에 관한 사항
2.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3.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생부종합전형 제출 서류 검증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입학처장, 입학사정관실장, 전임사정관(교수사정관, 전환사정관, 채용사정관) 및 고등학교 교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된다. (개정 2020. 9. 1.)

②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20. 9. 1.)

③ 위원 중 호서대학교 「입학전형교직원의 회피 및 배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회피·배제 대상자는 즉시 해촉하며 외부위원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20. 9. 1.)

[제목개정 2020. 9. 1.]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